

# 제102회 총회 결의 헌법 개정안

## 1. 헌법 정치 개정안

(1) 현행 민법과 충돌되는 부분 및 시대 상황에 맞춘 수정

현 행	개 정	비 고
<p><b>제4장 목사</b> 제2조 목사의 자격 ... 연령은 <u>만 30세 이상</u> 자로 한다.</p> <p>제3조 목사의 직무</p> <p>제4조 목사의 칭호</p> <p><b>2. 시무 목사</b> ... 단, 미조직 교회에서 <u>시무목사</u>의 시무 기간은 3년이요,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<u>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b>8. 종군 목사</b></p>	<p><b>제4장 목사</b> 제2조 목사의 자격 ... 연령은 <u>만 29세 이상</u> 자로 한다.</p> <p>제3조 목사의 직무 <b>7.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<u>거부하고,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.</u></b></p> <p>제4조 목사의 칭호</p> <p><b>2. 전임 목사</b> 단, 미조직 교회에서 <u>전임목사</u>의 시무 기간은 3년이요,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<u>청빙 절차를 거쳐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b>8. 군종 목사</b></p> <p><b>9. 군 선교사</b> <u>본 교단에서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군인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다.</u></p>	<p>개정</p> <p>추가</p> <p>용어수정 개정</p> <p>용어수정</p>
<p><b>제9장 당회</b> 제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<u>지교회 목사</u>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...</p> <p>제2조 당회 성수 ...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... ...장로 과반수와 <u>목사 1인</u>이 출석하여야...</p> <p>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<u>그 지교회 담임목사</u>가 될 것이나...</p>	<p><b>제9장 당회</b> 제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<u>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</u>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,</p> <p>제2조 당회 성수 ...장로 1인과 <u>당회장</u>의 출석으로... ...장로 과반수와 <u>당회장</u>이 출석하여야...</p> <p>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<u>교회의 대표자</u>로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...</p>	<p>추가</p> <p>개정</p> <p>추가</p>
<p><b>제10장 노회</b> 제6조 노회의 직무</p>	<p><b>제10장 노회</b> 제6조 노회의 직무</p>	

현행	개정	비고
<p>8.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은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<u>처단</u>할 권한이 있다.</p> <p><b>제15장 목사, 선교사 선거 및 임직</b>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...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<u>2년 이상 수업한 후</u>...</p> <p><b>제21장 의회(議會)</b> 제1조 공동의회 5. 회의(會議) <u>재산권 변동과 관련한 조항 없음</u></p> <p>제2조 제직회 3. 재정 처리 ① 제직회는 <u>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</u>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(행 6:3~5).</p> <p><b>제22장 총회 총대</b> 제3조 언권회원 3. 본 총회의 증경총회장</p>	<p>8.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은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<u>지도</u>할 권한이 있다.</p> <p><b>제15장 목사, 선교사 선거 및 임직</b>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...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<u>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한 후</u>...</p> <p><b>제21장 의회(議會)</b> 제1조 공동의회 5. 회의(會議) ... <u>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(정관)대로 하고,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</u></p> <p>제2조 제직회 3. 재정 처리 ① 제직회는 <u>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</u>한다.</p> <p><b>제22장 총회 총대</b> 제3조 언권회원 3. 본 총회의 증경 <u>총회장과 부총회장</u> <u>4. 단,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발언할 수 있다.</u></p>	<p>용어수정</p> <p>개정</p> <p>내용추가</p> <p>개정</p> <p>내용추가 개정</p>

(2) 어려운 단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수정

현행	개정	비고
<p><b>제13장 장로, 집사 선거 및 임직</b> 제5조 자유 휴직과 사직 장로 혹은 집사가 노혼(老昏)하거나,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거나, 이단이나 악행(惡行)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,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.</p>	<p><b>제13장 장로, 집사 선거 및 임직</b> 제5조 자유 휴직과 사직 장로 혹은 집사가 노혼(老昏)하거나, <u>신병(身病)</u>으로 시무할 수 없거나, 이단이나 악행(惡行)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,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.</p>	<p>한자첨가</p>

(3) 올바른 단어로 수정

현행	개정	비고
제7장 교회 예배의식 10. 권징(딤후전 15:12)	제7장 교회 예배의식 10. 권징(딤후전 5:20)	성구 교정
제11장 대회 제1조 조직	제11장 대회 제1조 <u>대회 조직</u>	제9장, 10장, 12장과 통일
제21장 의회 제1조 5. 회의(會議) ...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 수 <u>3분의 2의</u> 가와 ...	제21장 의회 제1조 5. 회의(會議) ...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 수 <u>3분의 2 이상의</u> 가와 ...	장로, 집사 및 권사 투표수와 통일

(4) 헌법적 규칙 한자 및 용어 수정

제1조 교회신설(新說) → 교회신설(新設)

제3조 교인의 권리 소원(所願) → 소원(訴願)

제7조 교회의 선거투표 정원수 이상을 기록한 → 정원수를 초과하여 기록한

2. 헌법 권징조례 개정안

(1) 내용 수정 부분

현행	개정	비고
제76조 ...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<u>혹 등사하여</u> ...	제76조 ...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<u>혹 복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</u> ...	개정
제94조 (부전지 조항 없음)	제94조 3. <u>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</u>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(附箋)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.	추가
제118조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<u>택할</u> 것이요...	제118조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<u>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</u> 것이요...	개정

현 행	개 정	비고
<p>제138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.</p>	<p>제138조 총회 재판국의 <b>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</b>,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. <b>다만,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.</b></p>	<p>개정 (본회 결정 후에 유효)  추가</p>
<p>제139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<u>예심 판결을</u>...</p>	<p>제139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<b>판결문을</b>...</p>	<p>개정</p>

(2) 용어 수정 부분 (이해가 쉬운 말, 올바른 단어로 변경)

현 행	개 정
<p>제10조 ...쌍방으로 <u>종용히 사화하게</u> 하고</p>	<p>제10조...쌍방으로 <u>종용히 화해하게</u> 하고</p>
<p>제12조 만일... <u>방조자</u>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...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<u>방조할</u> 것이다.</p>	<p>제12조 ... <u>변호인</u>을 지명 청구할 수 있고 ...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<u>돕게 할</u> 것이다.</p>
<p>제21조 소환장은 ... 의식송달(<u>意識送達</u>) 합당하다.</p>	<p>제21조 소환장은 ... 의식송달(<u>依式送達</u>) 합당하다.</p>
<p>제22조 피고가 ... 그 소환장에 대하여 <u>천연적 고장</u>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...</p>	<p>제22조 피고가 ... 그 소환장에 대하여 <u>불가피한 사유</u>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...</p>
<p>제27조 2. ... 선정한 <u>방조</u> 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.</p>	<p>제27조 2. ... 선정한 <u>변호인</u>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.</p>
<p>제51조 ... 다시 <u>교회의 종교 의식에</u> 출석하면 해벌한다.</p>	<p>제51조 ...다시 <u>교회의 각종 의식에</u> 출석하면 해벌한다.</p>
<p>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<u>차서</u>는 ...</p>	<p>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<u>순서</u>는 ...</p>
<p>제90조 ... 변호인의 <u>방조를</u> 청구한다.</p>	<p>제90조 ... 변호인의 <u>도움을</u> 구할 수 있다.</p>
<p>제93조 ... 반드시 <u>가책할</u> 것이요... 권리를 <u>의구히</u> 보존하게 한다.</p>	<p>제93조 ... 반드시 <u>문책할</u> 것이요... 권리를 <u>변동 없이</u> 보존하게 한다.</p>
<p>제94조 2. <u>공소심</u>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,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<u>폐한다</u>.</p>	<p>제94조 2. <u>항소심</u>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,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<u>폐하고 법률심(法律審)</u>으로 한다.</p>

현 행	개 정
<p>제134조 1. 총회 <u>폐회</u> 후에... 회장이 <u>자백</u>하여...</p> <p>제141조 ... 총회 <u>폐회</u>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.</p>	<p>제134조 1. 총회 <u>파회</u> 후에 ... 회장이 <u>지명</u>하여 ...</p> <p>제141조 ... 총회 <u>파회</u>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.</p>

(3) 오탈자 수정

- 1) 제 2조 “권병(權炳)” → 권병(權柄)
- 2) 제13조 “...조사 회보케 할 것이요 그 치리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...” → 치리회는
- 3) 제20조 “치리회가 재판회를 회집하면” → 재판회로
- 4) 제52조 “...만1년간 유예를 지난후 노회 관찰에” → 관찰(觀察)에
- 5) 제63조 “...재판회가 필요로 인증할 때에는” → 필요하다고 인정할

3. 유아세례연구위원회에서 보고한 개정안

현 행	개 정	비고
<p>예배모범 제11장 2. 유아세례 (1) (헌법적규칙 제6조 성례(聖禮) 2와 동일) (1) 만 2세까지 유아(乳兒)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이라도 세례교인이면 (혹은 입교인이면) 줄 수 있다.</p>	<p>예배모범 제11장 2. 유아세례 (1) (헌법적규칙 제6조 성례(聖禮) 2와 동일) (1) 만 6세까지 유아(幼兒)세례를, 만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 세례교인이면(혹은 입교인이면) 줄 수 있고,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.</p>	개정
<p>예배모범 제11장 3. 입교(2) (헌법적규칙 제6조 성례(聖禮) 3과 동일) (2) <u>유아세례 받은 자가</u>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.</p>	<p>예배모범 제11장 3. 입교(2) (헌법적규칙 제6조 성례(聖禮) 3과 동일) (2) <u>유아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</u>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.</p>	개정